국무총리 훈령 제365호

경제장관간담회규정

제 1 조 (목적) 주요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관계 부처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장관간담회를 둔다.

제 2 조 (기능) 경제장관간담회(이하 "간담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경제관계 부처간의 사전조정이 필요한 주요 경제현안
2. 국무회의 ·차관회의 등에 상정할 예정인 경제관련 안건 중 경제관계 부처간의 사전조정이 필요한 안건

제 3 조 (구성) ① 간담회는 재정경제부장관 ·과학기술부장관 ·농림부장관 ·산업자원부장관 ·정보통신부장관 ·보건복지부장관 ·환경부장관 ·노동부장관 ·건설교통부장관 ·해양수산부장관 ·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·국무조정실장 ·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·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·한국은행총재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·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한다.
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자외에 간담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 등을 간담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 4 조 (간담회의 개최) ① 간담회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

구분한다.

② 정기간담회는 매주 1회 개최하고, 임시간담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 다만, 임시간담회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정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간담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5 조 (간담회의 진행) 재정경제부장관은 간담회를 진행하며, 충실한 논의를 통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제 6 조 (간사 및 회의록)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다음 간담회에서 배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운영세칙)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간담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